



계약서

SEDEX 2016 WONIK IPS 부스 설치 공사건



전시 대행 도급 계약서

발주자: (주) WONIK IPS

공사명: SEDEX 2016 전시 부스 공사

장 소: SEOUL KOREA/COEX

전시일정: 2016년 10월 26일 ~ 10월 28일

공사일정: 2016년 10월 23일 ~ 10월 25일

철거일정: 2016년 10월 28일

도급금액: 이천오백팔십만원정 ₩ 25,800,000원 (V.A.T.별도)

위의 공사 도급에 관하여 발주인 (주) WONIK IPS를 "갑"으로 하고, 수급인 모마 디자인을 "을"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 한다.

제1조 계약의 목적

"갑"은 "을"에게 본 전시회의 부스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며 "을"은 이를 성실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공사범위

- 1. "을"이 수행하는 본 공사의 범위는 현장 설치공사 및 철거 공사로 "을"은 상기 일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.
 - 2. 본 공사의 범위는 설계도면에 준한다.

제3조 제출서류

"을"은 "갑"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제작 내용을 설명할 견적 및 도면,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.



제4조 공사기간

"을"은 각 전시회 설치 기간부터 전시 기간, 철거 기간(공휴일 포함)까지를 공사 기간으로 보며, 공사 기간 내에 본 계약에 위한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.

제5조 하도급 및 양도금지

"을"은 본 공사의 수행에 있어 "갑"의 승인 없이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삼자에 게 하도급 혹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
제6조 설계 및 사양 변경

"갑"의 필요에 의하여 공사의 설계 및 사양의 일부를 변경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 공사 내역 또는 견적을 사전 합의 하에 청구 할 수 있으며 추가 견적은 "갑"의 부담

으로 한다.

제7조 부적당한 시공

"갑"은 "을"이 시공한 공사 중 설계도면 또는 사양서와 부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고 "을"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 단, 이로 인하여 도급 금액을 증액하거나 공사 기일을 연장 할 수 없다.

제8조 하자 보증

"을"은 공사 목적물을 "갑"에게 인도 후 철거할 때까지 공사 목적물의 하자를 보증 하여야 하며, 이 기간 중 "갑"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"을"의 비용으로 동 하자를 보수하여 "갑"공사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9조 공사 지연

본 공사를 착공 또는 진행함에 있어서 천재지변, 불가항력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에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시 "을"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갑에게 통보하고 "갑"과 "을"이 협의 하여 공기의 연장 또는 중지를 결정 할 수 있다.

제10조 계약 중지 및 해약

- 1. "갑"은 "을"의 귀책 사유 없이 "갑"의 사정으로 이 계약을 해체할 경우에는 "갑"은 해체 시까지 "을"에게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 한다. 이 경우"을"은 "갑"으로 부터 받은 계약금에서 "을"의 발생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"갑"에게 반환한다.
- 2. 다음 각 항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 일부 또는 전부를 해약 하며 "갑"은 "을"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.

가. "을"이 계약 공기 내에 시공을 거부 하거나 완료 하지 못할 때 나. "갑"이 "을"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공기 내에 시공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 고 인정될 때.

제11조 대금 지급 방법

- 1. 계약서 날인 후, 공사비의 50%인 KRW 12,900,000원을 2016년 10월 21일까지 지불한다. 공사비의 잔금 50% KRW 12,900,000원은 전시 종료 후 11월 11일 이내에 지불 한다.
- 2. "갑"은 공사 금액 지급에 대하여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지급일까지 "을"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 보상금을 계약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정하여 보상한다.

(지체 보상금= 지체일수 *계약금액*0.01%)

제12조 이행지체

- 1. "을"이 계약서에 정한 공사 일정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하여 "갑"의 업무에 지장을 준 경우 매 지체 일수 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 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(이하 "지체보상금"이라 한다)을 산정하여 보상한다.
- 2. 지체보상금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. 지체보상금=지체일수 *계약금액*(0.01%)
- 3. "을"의 "갑"에 대한 지체 보상금은 계약상 명기 되어있는 잔금에서 공제한다.

제13조 이의 및 분쟁 해결

- 1. "갑"과 "을"은 본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상관습을 따르는 것으로 하고, 그 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.
- 2. 전항에 따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결 등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 법원으로 한다.

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"갑"과 "을"은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각 서명 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.

2016년 10월 11일

갑: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332-1 번지

(추) 원익아이피에스

대표이사 변 정 우

을 :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판교로 20 신한 데뷰 804호 모마 디자인

